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 12. 19.>
- 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別紙第9号書式] <改正 2018.12.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自動車365(www.car365.go.kr)でも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自動車新規登録申請書

-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裏面の注意事項を参考してください。なお、色で塗りつぶされた欄は、申請人の記入は不要です。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には該当するところにV印で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앞쪽)
(前頁)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 일시 受付日時	발급 일시 発行日時	처리 기간 즉시 処理期間 即時
소유자 所有者	성명(명칭) 氏名(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法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전자우편 電子メール	(휴대)전화번호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携帯)電話番号(製造上欠陥是正の通知の際文字 メッセージを送信)	
자동차 自動車	등록 번호 登録番号	색상 色	
	(구)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旧)登録番号 (抹消登録された車を再登録する場合のみ)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使用本拠地 (住民登録地、法人などの主たる事務所又は支店)		
	용도 用途	비사업용 []관용 []개인용 []법인·단체용 [] 非事業用 []公用 []個人用 []法人・団体会 운수사업용 []개인택시 []개인택시 외 [] 運輸事業用 []個人タクシー []個人タクシー以外	
비과세 코드 非課税コード	부관 附款	부관 종료일 附款終了日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自動車管理法」第8条、「自動車登録令」第18条及び「自動車登録規則」第27条の規定により、上記のように申請します。

년 年 월 月 일 日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申請人 氏名 (署名または捺印)
생년월일
生年月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 殿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本人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が、裏面の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 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申請人が、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の確認に同意しないか、電算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の規定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確認ができない場合には、その書類(法人登記簿謄本は除く)を申請者が直接提出してください。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申請人(代表者) (署名または捺印)

<p>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p>	<p>1. 신조차·수입차 1. 新車・輸入車</p> <p>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イ. 所有権を証明する書類(口号・ハ号の書類では所有権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のみ提出します。)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ロ. 自動車制作証(新車の場合にのみ提出します。)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ハ. 輸入申告済証またはこれに代わる税関の証明書(輸入車の場合にのみ提出します。ただし、「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第34条の規定による自己認証能力を備えた輸入者が輸入した場合には提出不要です。)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二. 臨時運行許可証及び臨時運行許可のナンバープレート(臨時運行許可を受けた場合にのみ提出します。)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ホ. 新規検査証明書(「自動車管理法」第30条の4に基づき、自己認証が免除された自動車のみ提出します。)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ヘ.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による旅客自動車運輸事業または「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による貨物自動車運輸事業に関する免許・許可、登録、認可または届出を証明する書類、または事業計画の変更を証明する書類(事業用自動車のみ提出します。)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ト. 安全検査証(「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第37条の規定により安全検査を受けた自動車のみ提出します。)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チ. 代理人が申請する場合には、委任状と委任された者の身分を確認できる身分証明書の写し(法人の場合は法人印鑑証明書を提出し、当該法人が提出した使用印鑑を登録官庁が対照・確認できる場合には、提出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各1부</p> <p>2.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2. 抹消登録された車を再登録する場合</p> <p>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イ. 所有権を証明する書類(抹消事実証明書では所有権を証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にのみ提出します)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ロ. 臨時運行許可証及び臨時運行許可のナンバープレート(臨時運行許可を受けた場合にのみ提出します。)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ハ. 新規検査証明書 1부</p> <p>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二.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による旅客自動車運輸事業または「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による貨物自動車運輸事業に関する免許・許可、登録、認可または届出を証明する書類、または事業計画の変更を証明する書類(事業用自動車のみ提出します。) 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ホ. 安全検査証(「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第37条の規定により安全検査を受けた自動車のみ提出します。) 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ヘ. 代理人が申請する場合には、委任状と委任された者の身分を確認できる身分証明書の写し(法人の場合には、法人印鑑証明書を提出します)各1부 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ト. 第三者の承諾書か、権利関係が解消されたことを証明する書類、またはそれに対抗できる確定判決謄本(抹消登録当時の抵当権などの登録上の利害関係を有する第三者がある自動車の場合にのみ提出します。)1부</p>	<p>수수료 手数料</p> <p>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p> <p>2,000ウォンただし、使用本拠地以外の市・道で申請する場合には2,500ウォンです。</p>
--	---	--

<p>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p> <p>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が確認する事項</p>	<p>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시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1. 所有者が個人である場合には、住民登録票抄本、運転免許証または外国人登録事実証明(住民登録証のコピーまたは運転免許証のコピーやその他使用本拠地を確認できる書類に代えることができます)</p> <p>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시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2. 非事業用自動車を登録する法人等の場合には、事業者登録証又は法人登記事項証明書(事業者登録証のコピーやその他使用本拠地を確認できる書類に代えることができます)</p> <p>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p> <p>3. 申請者が提出する書類(「自動車登録規則」第27条第1項第4号及び第6号を除く書類)</p>
---	---

<p>「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p> <p>「地方税特例制限法」による取得税減免対象</p>	<p>[]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p> <p>[] 「障害者福祉法」による障害者で、かつ障害等級1級から3級までに該当する者</p> <hr/>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p> <p>[] 「国家有功者等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国家有功者で、傷痕等級1級から7級までの判定を受けた者</p> <hr/> <p>[]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p> <p>[] 「5·18民主有功者礼遇に関する法律」に基づいて登録した5·18民主化運動の負傷者で、かつ身体障害等級1級から14級までの判定を受けた者</p> <hr/> <p>[]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p> <p>[] 「枯葉剤後遺疑症などの患者支援および団体設立に関する法律」による枯葉剤後遺疑症患者で、かつ硬度障害以上の障害等級の判定を受けた者</p>
--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方税特例制限法」에 관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유의사항 注意事項

-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 自己認証が免除される自動車(「自動車管理法」第30条の4)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引越しの荷物として搬入・輸入された自動車であり、「対外貿易法」に基づいて輸入承認が免除される場合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 「自動車管理法」第70条第1号から第3号までに該当する自動車で、国内で運行した車を輸入する場合など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登録を受けずに車を運転する場合には、関連規定に基づいて懲役や罰金に処せられます。(「自動車管理法」第80条第1号)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携帯)電話番号は、あなたの自動車管理(リコールなど)に必要な事項を案内・サポートする目的で利用されますので記入をお願いします。なお、番号を変更された場合には管轄申告官庁にご連絡ください。ただし、本人が希望しない場合は、書かなくても構いません。